

대한민국 재외선거 - 이렇게 합니다.



제공일자 2010. 9. 15.

총 1 면

www.nec.go.kr

☎82-2-503-0648

FAX82-2-504-5350

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의 설치·이용 금지

- ◎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·단체·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.

누구든지 「공직선거법」에 의한 제 61 조에 의한 선거사무소·선거연락소 이외에 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)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·후원회·연구소·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소·선거연락사무소와 유사한 기관·단체·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.

또한, 기존의 기관·단체·조직 또는 시설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(공직선거법 제 89 조)

- ※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에 “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둘 수 없음(공직선거법 제 61 조, 제 218 조의 14)

[유사기관 설치 관련 위반사례]

- ▶ 당초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 등을 정당·후보자나 제 3 자가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으로 변질시키거나 그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.

<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(www.nec.go.kr) >

재외선거 홈페이지(ok.nec.go.kr)가 오픈되었습니다.

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